

의안번호	2212721
의 퇴 인	백승아 의원
회 답 일	2025.10.22.
추계번호	25C4877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03억 2,000만원(연평균 120억 6,4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안 제5조)	65	-	-	-	-	65	13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안 제6조)	11,948	11,448	11,857	12,281	12,721	60,255	12,051
합 계	12,013	11,448	11,857	12,281	12,721	60,320	12,064

주: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2	안 제6조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3	안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X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대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수 및 규모,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 관련 대책·사업 등 세부 계획 및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안 제6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안 제5조) 제정안에 따라 5년 주기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소요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7년부터 연구용역비 지출이 발생한다고 가정
 - (안 제6조)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교육부 장관이 설치하는 ‘중앙지원센터’와 교육감이 설치하는 ‘지역지원센터’로 구분하고, 유사 사례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본계획(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¹⁾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사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값(6,500만원)을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표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관련 연구용역

(단위: 백만원)

연구주제	소관	사업연도	연구용역비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도	2023	60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상북도	2024	69

자료: 정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 추계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6,500만원(연평균 1,300만원)으로 추계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65	-	-	-	-	65	13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안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매년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사례를 준용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1개의 중앙지원센터와 17개의 지역지원센터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배치인력) 2025년 기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3명,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총 16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는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에 각각 총 13명과 16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인건비) 유사사례의 1명당 연간 인건비(2025년 기준 중앙센터 3,881만원, 지역센터 5,182만원²⁾)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³⁾를 적용하여 산출
 - (운영비) 유사사례의 운영비(2025년 기준 중앙센터 4억 1,000만원, 지역센터 9억 3,500만원)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⁴⁾를 적용하여 산출
 - (자산취득비) 센터 설치에 따른 신규 배치 인력(중앙 13명과 지역 163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추계연도 첫 해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에서 조사된 비용(420만원, 정부부처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2) 참고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보수 차이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 관리규칙」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고, 기본연봉 외에 정액인 상여금과 급량비를 추가로 받는데 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받고 명절휴가비와 설치주체인 시·도별로 지역센터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격수당, 정액급식비, 복리후생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7. 기준,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3.9	3.8	3.8	3.8	3.8	3.8

4)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7. 기준, 단위: %)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 추계결과,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602억 5,500만원(연평균 120억 5,100만원)으로 추계

[표 4]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앙지원센터(1개소)							
인원 수(A)	13	13	13	13	13	—	—
1명당 연간 인건비(B)	42	43	45	47	49	—	—
인건비(C=A×B)	544	565	586	609	632	—	—
운영비(D)	427	435	444	453	462	—	—
소 계(E=C+D)	971	1,000	1,030	1,061	1,093	5,155	1,031
지방지원센터(17개소)							
인원 수(F)	163	163	163	163	163	—	—
1명당 연간 인건비(G)	56	58	60	63	65	—	—
인건비(H=F×G)	9,110	9,456	9,815	10,188	10,575	—	—
운영비(I)	973	992	1,012	1,032	1,053	—	—
소 계(J=H+I)	10,082	10,448	10,827	11,220	11,628	54,206	10,841
자산취득비							
인원 수(K)	176	—	—	—	—	—	—
1인당 자산취득비(L)	5	—	—	—	—	—	—
소 계(M=K×L)	895	—	—	—	—	895	179
합 계(N=E+J+M)	11,948	11,448	11,857	12,281	12,721	60,255	12,051

주: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이고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